♦◈ 목 차 ◈◈

♦ 보험약관

• 무배당 파워덱스플러스저축보험(적립형)
• 무배당 파워덱스플러스저축보험(거치형) 4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7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9
•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10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	신체부위의	설명도	 116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덱스플러스저축보험 (적립형)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말로
 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모 및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 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
- 기 때문입니다.

 주가지수연동기간 중에는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주가지수연동이율이 0%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의 연복리 1.0%이자 해당액을 최저로 보증 지급합니다.
- 주가지수연동이자는 매 연단위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 일 이후에 지급하며, 주가지수평가기간의 연중에 계약 이 해지된 경우 해당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지급하지 아 니하며.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을 연복리
 - 1.0% 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지계약이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차회 도래하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전에 부활하는경우에는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지급합니다.

▶≫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계약자적립금은 주가지수연동이율,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 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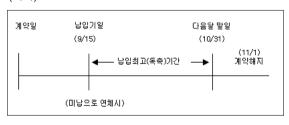
5. 계약취소

•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로 합니다.

(예시)



7.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 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 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 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 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 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 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헊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

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덱스플러스저축보험 (적립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12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12 제 2조 【청약의 철회】12 제 3조 【용어의 정의】13 제 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17 제 5조 【계약의 무효】18 제 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18 제 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제 7도 [제국자의 검의에지 및 제도함자(도함대당자)의 지난당의 철회권]19 제 8조 [계약의 소멸]19 제 9조 [보험 나이]19 제10조 [자산의 운용]20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20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20 제1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21 제1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21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22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22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23 제1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3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4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4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24 제20조 [주가지수연동이율의 적용] ····25 제2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6 제22조 [해지환급금] ·····28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28 제24조 [소멸시효] ····28
세24호【고털적요】28

세4판 모엄계약시 계약사의 계약선 알딜의무 등29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29
제26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29
제2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30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31
1.50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31
제29조 【주소변경 통지】31
제30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31
제31조【대표자의 지정】
제3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32
제3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32
제34조 [보험금 등의 지급]32
제35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33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34
제37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34
제38조 [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35
제39조 [분쟁의 조정]35
제40조【관할법원】36
제41조【약관의 해석】36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36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36
제4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36
제45조【준거법】37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37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덱스플러스저축보험 (적립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가. 기본보험료 외에 주가지수 연동기간 경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중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목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국고 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 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이 계약 의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목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3. 주가지수연동기간

회사가 제5호에서 정한 주가지수와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평가하여 계약자적립금에 반영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보험의 주가지수연동기간은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이하 "주가지수연동기간 시작일" 이라합니다)부터 다음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주가지수연동기간 시작일로 합니다.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가지수연동기간
7년	3년, 5년	2년
10년	3년	3년
10년	5년, 7년, 10년	5년
	3년	3년
12년	5년	5년
	7년, 10년, 12년	7년

그러나 다음 계약에 한해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일의 2개월전 계약해당일에서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일의 직전월 월계약해당 일의 5영업일 전까지 계약자가 주가지수연동기간의 연장을 신청 하는 경우 주가지수연동기간은 주가지수연동기간 시작일부터 다음 의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기간	납입기간	연장 후 주가지수연동기간	연장조건
7년	3년	3년	94%
7년	5년	5년	95%
10년	7년	7년	-
10년	10년	9년	97%
12년	10년	10년	96%
12년	12년	10년	96%

다만,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일의 3개월 전 월계약해당일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이 상기의 연장조건 이상인 계약에 한하며, 10년 만기 7년납 계약은 연장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주가지수평가기간

이 보험의 주가지수평가기간은 보험계약일의 다음날부터 보험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날(이하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로 합니다)부터 매1년 으로 하며, 회사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을 보험계약 청약 전에 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5. 연계주가지수

주가지수연동기간 중 평가대상이 되는 주가지수로 KOSPI200으로 합니다.

6. 주가지수연동이율

가.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중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 주가지수의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을 합산하여 얻어지는 이자율 을 말합니다. 다만,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은 0%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

주가지수연동이율(%)

=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 × 참여율(%)

주가지수연동이자는 「기본보험료 × (기본보험료 납입횟수 - 1)」에 주가지수연동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의 1.0% 이자 해당액(이하 "주가지수연동이자 최저보증금액"이라 합니다)을 최저보증지급하며,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이하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이라 합니다)기준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기본보험료 납입횟수는 계약체결시부터 매 주가지수명

- 가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납입해당일 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납입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나. '가'목의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순보험료(영업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부리 적립한 금액이며, 보험계약일부터 다음달 계약해당일 까지는 공시이율. 그 이외의 기간에는 1.0%의 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다. '가'목에 따라 지급된 주가지수연동이자 중 주가지수연동이자 최저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 보험의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공시이윸로 적립한니다
-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과 주가지수평가 기가시작일이 속한 달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 횟수는 계약체결시부터 매 주가지수평가기가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입한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마.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이 계약이 해지되 거나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된 날 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 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지된 날 또는 제17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의 1.0% 이자 해당액 을 지급합니다.

7.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가, 매월 직전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의 종가(기준지수)와 매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의 종가(만기지수)를 기준으로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을 계산합니다. 다만,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은 최고수익률 및 최저수익률을 한도로 합니다.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 = Max [Min { 만기지수 기준지수 기준지수 × 100(%),
 - 최고수익률(cap)},최저수익률(floor)]
- (주) 지수기준일 :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개 월 경과해당일의 전일(다만, 매 1개월 경과해당일이 없 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수기준일로 하며, 지수기준 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 직전 증권시장 개장일로 합니다)

- 만기지수 : 매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
- 기준지수 : 직전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다만, 최초 기준지수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전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로 하며,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전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 직전 증권시장 개장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로 합니다)
- 최고수익률(cap) :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계산시 반영하는 수익률의 최고한도
- 최저수익률(floor) :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계산시 반영 하는 수익률의 최저한도
- 나. 회사는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가지수평가 기간 시작일 10영업일 전에 '가'목의 최고수익률(Cap) 및 최저 수익률(floor)을 공지합니다.

8. 참여율

- 가. 주가지수평가기간 중에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 중 실제 주가지수연동이율로 지급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나. 회사는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가지수평가 기간 시작일 10영업일 전에 '가'목의 참여율을 공지합니다.
- 다. 회사는 1종 이상의 참여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매주가지수연동기간 중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경우 설정된 참여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9.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11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 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 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 10.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 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 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 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답변,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기본보험료
 - 2. 계약자
 -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감액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에는 납입보험료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⑤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⑥ 계약자가 제5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5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험 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10조【자산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은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 이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며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 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2.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 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 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체결시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 최고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약관 제30조(주소변경 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에 연체이자율(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용하며,연체이자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로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제1항

에 의하여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일 전일까지 도래한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 및 부활 (효력회복)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에 해당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 회복)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까지의 계약자 적립금을 이 계약과 동년 동월에 가입한 계약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로 적립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이 해지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 이전에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 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효과) 및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 합니다.

-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만기보험금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부터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의 1.0% 이자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 ②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0조 【주가지수연동이율의 적용】

- ①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기간 중 매년 주가지수연동이율 또는 공시 이율(이하 주가지수연동이율 및 공시이율을 "연동이율"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주가지수연동기간 중 주가지수연동이율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제 3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 기준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부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연동이율의 적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래하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의 5영업일 전까지 회사에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의 5영업일 전까지 변경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적용한 연동이율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 의해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 전일까지 도래한 매 주가지수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주가지수연동이율의 적용은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1. 매입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구입자금 규모가 작아 해당 상품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
 - 2. 매입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계약 자에게 적정 수익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2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보험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공시이율
 - 1. 이 보험의 보험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6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하며, 계약건별로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보험계약일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제2호의 공시이율 산출시점은 매월 1일로 한니다
 -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수익률과 특수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 지표를 고려하여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의 80%를 최저 한도로 하며, 10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공시이율 = 외부지표×30%+ [I - log (I ×50+1)/100]×70%

가. 외부지표

외부지표 =
$$\frac{C1 + C2}{2}$$

- C1 : 산출시점에서 국고채권(5년만기)의 직전 6개월 월평균 수익률 다만, 국고채권(5년만기)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 하는 국고채권(5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YTM)로 합니다
- C2 : 산출시점에서 5년만기 특수채(공사채 및 공단채) AAA 수익률의 직전 6개월 월평균 수익률다만, 5년만기 특수채(공사채 및 공단채) AAA 수익률은 공신력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2개사에서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무보증 특수채(공사채 및 공단채) AAA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YTM) 각각의 평균값으로 합니다.

나. 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I)

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 $(I) = \frac{2 imes (I_s - E_s)}{S_6 + S_0 - (I_s - E_s)} imes \frac{12}{6}$

- $lacksymbol{\blacksquare}$ I_s : 직전 6개월간 투자수익
- E_s: 직전 6개월간 투자비용
- $lacksymbol{\blacksquare}$ S_6 : 산출시점 직전 6개월 초 현재 운용자산
- S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②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의 공시이율
 - 1. 이 보험의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

되는 공시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가 확정 적용합니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공시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가. 내부지표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times (I-E)}{A_{12}+A_0-(I-E)}$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₁₂: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₀: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나. 외부지표

외부지표 산출식 = B1 × r + B2 × (1-r)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 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 합니다.
- 기중이동평균이월 (B_i) = $\dfrac{B_i(-3)\times 1+B_i(-2)\times 2+B_i(-1)\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으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0%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0%)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0%)로 부리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⑥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22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지된 날까지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의 1.0% 이자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3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 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6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1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한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 는 경우
-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 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5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

- 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에는 보험년도 기준 연 2회에 한하여 주가지수연동이자 중 주가지수연동이자 최저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누적금액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 ②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 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1회당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회사는 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가할 수 있 으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에는 인출금액에서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 시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제38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 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5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만기보험금(약관 제17조 제1호)

지급사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만기시 계약자적립금

■ 사망보험금(약관 제17조 제2호)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기본보험료의 10배액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 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약관 제35조 제2항 관련)

■ 사망보험금(약관 제17조 제2호)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만기보험금(약관 제17조 제1호)

적립 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까지의 기간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지급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공시이율
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적립 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공시이율 + 1%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약관 제22조 제1항)

보험금 지급사원	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까지의 기간 1년이내

적립 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공시이율 + 1%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1. 상기 공시이율은 제2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약관 제24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덱스플러스저축보험(거치형)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말로
 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 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모 및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 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주가지수연동기간 중에는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주가지 수연동이율이 0%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주가지수연동 이자는"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의 연복리 1.5% 이자 해당액을 최저로 보증 지급합니다.
- 주가지수연동이자는 매 연단위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하며, 주가지수평가기간의 연중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 며,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을 연복리 1.5% 이 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해지계약이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차회 도래하는 주가지수평가기 간 종료일까지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전에 부활하는 경우에 는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지급합니다.

▶≫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계약자적립금은 주가지수연동이율,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 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 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 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된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덱스플러스저축보험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5	2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5 제 2조 【청약의 철회】5	2
제 3조 [용어의 정의]5	3
제 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5	6
제 5조【계약의 무효】5	
제 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5	7
제 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5	
제 8조 【계약의 소멸】 ······5	8
제 9조 【보험 나이】	
제10조【자산의 운용】5	
페이지 보험금이 나이 (게아지이 조디 이묘)	^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5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5	9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6	0
제1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6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6	0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6	1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6	1
제16조【주가지수연동이율의 적용】6	2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6	
제18조【해지환급금】6	
제19조【배당금의 지급】6	5
제20조【소멸시효】6	5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6	5
제 2 7 조 【계약저 안립 이무】	5
제21조 【계약전 알릴 의무】6 제22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바의 ㅎ과】6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6	6
	6 7

세5판 모엄금 시급 등의 절자
제25조 【주소변경 통지】68
제26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68
제27조 【대표자의 지정】68
제2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68
제2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69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69
제31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70
제32조 【계약내용의 교환】70
제33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71
제34조【보험계약대출】71
제6관 분쟁조정 등72
제35조【분쟁의 조정】72
제35조 【분쟁의 조정】72 제36조 【관할법원】72
제36조【관할법원】72
제36조【관할법원】72 제37조【약관의 해석】72
제36조【관할법원】72 제37조【약관의 해석】72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72
제36조 【관할법원】
제36조 【관할법원】
제36조 【관할법원】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덱스플러스저축보험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 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가지수연동기간

회사가 제3호에서 정한 주가지수와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평가하여 계약자적립금에 반영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보험의 주가지수연동기간은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이하 "주가지수연동기간 시작일"이라합니다)부터 다음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주가지수연동기간 시작일로 합니다.

보험기간	주가지수연동기간
10년	5년

그러나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일의 2개월 전 계약해당일에서 주가 지수연동기간 종료일의 직전월 월계약해당일의 5영업일 전까지 계약자가 주가지수연동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주가지수연 동기간 시작일부터 9년을 주가지수연동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가지수평가기간

이 보험의 주가지수평가기간은 보험계약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날(이하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로 합니다)부터 매1년으로 하며, 회사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을 보험계약 청약전에 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연계주가지수

주가지수연동기간 중 평가대상이 되는 주가지수로 KOSPI200으로 한니다

4. 주가지수연동이율

가.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중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 주가지수의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을 합산하여 얻어지는 이자율 을 말합니다. 다만,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은 0%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

주가지수연동()(율(%)

=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 × 참여율(%)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일시납보험료에 주가지수연동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 적립금"의 1.5% 이자 해당액(이하 "주가지수연동이자 최저보증 금액"이라 합니다)을 최저 보증지급하며,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이하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이라 합니다) 기준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나. '가'목의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순보험료(영업보 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부리 적립한 금액이며, 보험계약일부터 다음달 계약해당일까지는 공시이율, 그 이외의 기간에는 1.5%의 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다. '가'목에 따라 지급된 주가지수연동이자 중 주가지수연동이자 최저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 보험의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라.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이 계약이 해지되 거나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된 날 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지된 날 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의 1.5% 이자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5.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가. 매월 직전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의 종가(기준지수)와 매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의 종가(만기지수)를 기준으로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을 계산합니다. 다만,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은 최고수익률 및 최저수익률을 한도로 합니다.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 Max [Min { \frac{ 만기지수 - 기준지수}{ 기준지수} \times 100(\%)},$

최고수익률(cap)},최저수익률(floor)]

(주) ■ 지수기준일 :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개월 경과해당일의 전일(다만, 매 1개월 경과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수기준일로 하며, 지수기준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 직전 증권시장 개장일로 합니다)

- 만기지수 : 매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
- 기준지수 : 직전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 (다만, 최초 기준지수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의 연계주가지수 종가로 하며,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전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 직전 증권시장 개장일의 연계주가지수 종가로 합니다)
- 최고수익률(cap) :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계산시 반영 하는 수익률의 최고한도
- 최저수익률(floor) :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계산시 반영 하는 수익률의 최저한도
- 나. 회사는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가지수평가 기간 시작일 10영업일 전에 '가'목의 최고수익률(Cap) 및 최저 수익률(floor)을 공지합니다.

6. 참여율

- 가. 주가지수평가기간 중에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 중 실제 주가지수연동이율로 지급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나. 회사는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가지수평가 기간 시작일 10영업일 전에 '가'목의 참여율을 공지합니다.
- 다. 회사는 1종 이상의 참여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매 주 가지수연동기간 중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경우 설정 된 참여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7.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8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 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 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 8.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 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 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 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등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납입보험료
 - 2. 계약자
 -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료를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감액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화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주가지수연동기 간 이내에는 납입보험료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⑤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⑥ 계약자가 제5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5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 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10조【자산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은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 이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며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 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2. 제21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 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의 1.5% 이자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치 경우
 -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6조 【주가지수연동이율의 적용】

- ①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기간 중 매년 주가지수연동이율 또는 공시이율(이하 주가지수연동이율 및 공시이율을 "연동이율"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주가지수연동기간 중 주가지수연동이율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제 3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 기준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전일까지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연동이율의 적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래하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의 5영업일 전까지 회사에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의 5영업일 전까지 변경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적용한 연동이율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1. 매입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구입자금 규모가 작아 해당 상품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
 - 2. 매입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계약 자에게 적정 수익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1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보험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공시이율
 - 1. 이 보험의 보험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6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하며, 계약건별로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보험계약일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제2호의 공시이율 산출시점은 매월 1일로 합니다.
 -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수익률과 특수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 지표를 고려하여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의 80%를 최저 한도 로 하며, 10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공시이율 = 외부지표×30%+ [I - log (I ×50+1)/100]×70%

가. 외부지표

외부지표 =
$$\frac{\text{C1} + \text{C2}}{2}$$

■ C1 : 산출시점에서 국고채권(5년만기)의 직전 6개월 월평균 수익률

> 다만, 국고채권(5년만기)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 하는 국고채권(5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YTM)로 합니다.

■ C2 : 산출시점에서 5년만기 특수채(공사채 및 공단채) AAA 수익률의 직전 6개월 월평균 수익률 다만, 5년만기 특수채(공사채 및 공단채) AAA 수익률은 공신력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2개사에서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무보증 특수채(공사채 및 공단채) AAA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YTM) 각각의 평균값으로 합니다

나. 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I)

특별계정 운용자산수익률
$$(I) = \frac{2 \times (I_s - E_s)}{S_6 + S_0 - (I_s - E_s)} imes \frac{12}{6}$$

- I_、: 직전 6개월간 투자수익
- E_s: 직전 6개월간 투자비용

 $lacksymbol{\blacksquare}$ S_6 : 산출시점 직전 6개월 초 현재 운용자산

- S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②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의 공시이율
 - 1. 이 보험의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 되는 공시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 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 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가. 내부지표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times (I-E)}{A_{12}+A_0-(I-E)}$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₁₂: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나, 외부지표

외부지표 산출식 = B1 × r + B2 × (1-r)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 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 합니다.

■ 기중이통평균이월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 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 하여는 연복리 2.0%으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0%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0%)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0%)로 부리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⑥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18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지된 날까지 "주가지수연동이자 기준적립금"의 1.5% 이자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0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1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2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1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 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21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 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 자에게 통지하고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 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되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7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1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따릅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3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에는 보험년도 기준 연 2회에 한하여 주가지수연동이자 중 주가지수연동이자 최저보증금 액을 차감한 금액의 누적금액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 ②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다만, 특약이 부 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1회당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회사는 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가할 수 있 으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에는 인출금액에서 주가지수연동기간 이 후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일시납보험료가 400만원일 경우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일시납보험료 한도 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 인출 가능

제34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 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만기보험금(약관 제13조 제1호)

지급사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만기시 계약자적립금	

■ 사망보험금(약관 제13조 제2호)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별표2)

재해 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파워텍스플러스저축보험(적립형) 약관의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합니다.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약관 제31조 제2항 관련)

■ 사망보험금(약관 제13조 제2호)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만기보험금(약관 제13조 제1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공시이율 지급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1년초과 기간 1%)%

적립 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공시이율 + 1%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약관 제18조 제1항)

적립 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기 까지의 기간	l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지급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이자	1년초과기간	1%

적립 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공시이율 + 1%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 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약관 제20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즉시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79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제 5조 【특약의 소멸】	···79 ···80 ···80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81 ···82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82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	···82 ···83
제5관 기타사항	84
제13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84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즉시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 일로 합니다.[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 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 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계약자는 연금전환 신청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 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정액형(10년, 20년, 100세 보증)	
보증기간부	체증형(10년, 20년 보증)	
(개인계약,부부계약)	소득보장형(10년, 20년 보증)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 개인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합니다.
 - 2.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 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 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하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 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

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라 합니다!

- ② 부부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 (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 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부부계약의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보현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 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 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입니다.

제 5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 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모두 사망]이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이 특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별표1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8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이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이하 "전환전 보험기간"이라 한다)과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으로한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국고채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 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 9조【해지화급금】

- ① 이 특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말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전환전 보험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 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0%)로 부리됩니다.

제10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3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 생존연금(제7조)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 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1/ 1/11 (2/11)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중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 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 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 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 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 을 지급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중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 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 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 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체증형 (10년/20년 보중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 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 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 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 을 지급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중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 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 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사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액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급되는 연 금해당액의 50%를 지급

나. 확정연금형

지급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사유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지급액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 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다. 상속연금형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계약
지급역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공시이율에 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하며, 피보혐 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자(보험대

- ㈜ 1.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2.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보험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3.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10년,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7. 연금지급 개시후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 연금 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 기간의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파워텍스플러스저축보험(적립형) 약관의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합니다.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12조 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생존 연금 (제 7 조)	회사가 생존연 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 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 이율
	회사가 생존연 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 급 할 사유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 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날까지의 기간	이율
	금액글 월년 경우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의 50%
	보험금청구일의 지의 기간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 지의 기간	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환급금 (제9조	해지환급금 청 ⁻ 일까지의 기간	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	공시이율 +1%
제1항)	지급기일의 다- 일까지의 기간	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	보험계약대출이 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 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93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96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96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98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98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99 제1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00 제18조 【보험계약대출】 ····100
제5관 기타사항100
제19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00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 된 보험계약"은 "전환전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때 제 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 반기 위한 계약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 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 전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정액형(10년, 20년, 100세 보증)	
보증기간부	체증형(10년, 20년 보증)	
(개인계약,부부계약)	소득보장형(10년, 20년 보증)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전환전 계약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합니다.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하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을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 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정화일시금
 - 2.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 3. 계약자
 -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전환일시금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5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금 개시일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 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모두 사망]이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이 특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생존연금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특약의 소멸)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연금개시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이하 "전환전 보험기간"이라 한다)과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으로한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국고채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에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13조【해지환급금】

- ① 이 특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말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전환전 보험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 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0%)로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0%)로 부리됩니다.

제14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 해당하는 생존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 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9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 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 (제9조 제1호)

지급 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 금액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 생존연금(제9조 제2호)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중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 도 연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 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 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 아 있을 때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지급액	체증형 (10년/20년 보중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 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중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 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액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나. 확정연금형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사유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기그세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지급액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다. 상속연금형

1. 0 1 2 2 0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1.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2.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보험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3.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10년, 20 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확정된 연금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7. 연금지급 개시후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 지급기간의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덱스플러스저축보험 (적립형) 약관의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합니다.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제16조 제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9조 제1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회사가 생존연 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공시 이율
생존 연금 (제9조 제2호)	회사가 생존연 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이 더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기간	공시 이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 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기간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해지 환급금 (제13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11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 관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10
제 2조【계약자의 범위】109
제 3조 【세금우대 요건】109
제 4조【세금우대등록】109
제 5조【가입한도】10년
제 6조【가입한도 산정방법】10년
제 7조【한도변경】110
제 8조【세금우대처리】11
제 9조【특별중도 해지】110
제10조【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정보제공】11
제11조【준용규정】116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특별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세금우대종 합저축"으로 신청한 경우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자의 범위】

계약자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만 20세 이상의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합니다. 다만,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아니 합니다

제3조【세금우대 요건】

- 이 특약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보험가입시점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해지일 또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이하 "계약유지 기간"이라 합니다)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조【세금우대등록】

제3조에 의해 계약자가 주계약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한 경우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 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으로 등록하여 드립니다.

제5조【가입한도】

-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납입할 보험료 총액은 모든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을 포함하여 1인당 1천만원(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 등은 1인당 가입한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③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금액은 이 보험에서 정한 보험료 합계액 중 일부만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가입한도 산정방법】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도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 1. 일시납계약의 경우에는 일시납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 2. 연납 및 분할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총 납입할 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3.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7조【한도변경】

계약자가 이 특약에서 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등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가입한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세금우대처리】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제9조【특별중도 해지】

-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세율을 적용합니다.
 - 1. 보험계약자의 사망·해외이주
 -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계약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계약자의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지병의 박생
 -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별 세금우대 종합저축 자료(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세금우대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계약내용의 변경사항)를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합니다.
- ②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 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조회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가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 는 계약금액총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조세특례 제한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13
13
13
3
13
14
4
14
14
15
15
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 대상)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시 구비서류】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

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신체부위의 설명도

